



제426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장학금 다자녀 기준 완화 〉

■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33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참고	7
참고 1. 다자녀 기준 완화 비용 추계(안)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재수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1.
3. 회부연월일 : 2025. 4.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거 지원, 공공요금·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 지원 정책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출산 장려 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출산 장려 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현행	개정안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u>셋 이상의</u>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 ----- ----- ----- ----- <u>둘 이상의</u>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학재단법”이라 함) 제49조의4¹⁾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는 우선적 학자금 지원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가구

1) 장학재단법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의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²⁾하고 있음.

< 2025년 2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한 자녀, 두 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I 유형)		전액	600			440			360		100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	첫째	전액	610			505			465		135	-
	둘째	전액										
		셋째	전액									200

*위 단가는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연간 지원 단가(2학기부터 적용)임.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자료: 한국장학재단

< 연도별 다자녀 가구 장학금 지원 현황 >

(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인원	215,033	216,615	202,515	217,358	208,360	210,197
금액	775,210	786,216	731,397	941,515	913,594	952,230
1인당 지원액 (만원)	360.5	363.0	361.2	433.2	438.5	453

자료: 한국장학재단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

2) (국가장학금 I 유형) 저·중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지원구간별(8구간 이하)로 차등하여 장학금 지원(B학점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모든 대학생(미혼인 만 39세이하 입학자까지)에게 지원구간(8구간 이하)별로 차등하여 장학금 지원(B학점 이상)

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자녀 가구일수록 생활비·교육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현행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은 실제 가계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줄게 되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는 입법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가정의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비 부담을 완화³⁾하려는 계획에 따라,

2022년에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정의 첫째 학자금 지원액을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고 둘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 것을 시작으로,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2021.9.15.
 “2022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2021년 기준) 〉

(단위: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현행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개선	다자녀	첫째	700(+18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둘째	전액							
		셋째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 기초·차상위 2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은 국가장학금 I 유형으로 지원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와 중위소득 200%(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2025년에는 학자금 지원 9구간에 해당하는 가구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장학금 규모를 두 자녀 이하 가정 보다 많이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왔다는 점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할 때 추가로 소요될 예산 부담 가능 여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 해소를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다자녀 지원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면서 둘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면 연간 최대 1조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⁴⁾된다는 점,

다수의 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정하고 각종 지원사업의 기준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참고1. 다자녀 기준 완화 시 비용 추계(안)

5) (3자녀 이상 기준)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청약 우선공급 등

< 개정안 적용 시 최대 다자녀 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비교 >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현행	다자녀	첫째	전액	610			505			465		135	-
		둘째											-
		셋째이상	전액									200	-
↓													
개정안	다자녀	첫째	전액	610			480			450		135	-
		둘째											전액
		셋째이상	전액									전액	-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한편,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되어 있는바, 향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 발의 현황 >

(2025. 6. 현재)

대표 발의의원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지혜의원	제2201899호 (2024.7.18.)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장학금 지원계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상지급함.

문 의 처

02) 6788-5193

참고1. 다자녀 기준 완화 비용 추계(안,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1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은 아래와 같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다자녀 기준이 현행 3인에서 2인으로 확대되면 그 차이만큼 추가 소요가 발생 ※ 현행 다자녀 형제 서열 셋째 이상은 전액 지원

① (9구간 다자녀 기준 2인 완화 AND 전액 기준 유지) 현재 1유형 수혜자 중 형제 2명인 학생들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약 2,300억원 추가소요 발생

※ 약 2,300억원 = 약 100만명(1학기+2학기 지원건수) × 약 23만원(학기당)*

* 상기 수치는 학기 도중 추정한 값으로 향후 변동 가능

② (9구간 다자녀 기준 2인 완화 AND 전액 기준 8구간 이하 서열 둘째로 확대)

※ 약 6,200억원 = 약 90만명(1학기+2학기 지원건수) × 약 69만원(학기당)*

* 상기 수치는 학기 도중 추정한 값으로 향후 변동 가능

③ (9구간 다자녀 기준 2인 완화 AND 전액 기준 9구간 이하 서열 둘째 확대) 서열 둘째까지 전액시 1조원 추가소요(①대비+ 약 8,000억원)

※ 약 1조원 = 약 112만명(1학기+2학기 지원건수) × 약 90만원(학기당)*

* 상기 수치는 학기 도중 추정한 값으로 향후 변동 가능

<국가장학금 1유형 및 다자녀 추경을 반영한 연간 지원 단가(2학기부터)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유형	전액		600			440		360		100(-)
다자녀-1유형 차이	-		10			65		105		35
다자녀	첫째,둘째	전액	610			505		465		135(-)
	셋째이상		전액							200(-)

※ 위 단가는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연간 지원 단가(2학기부터 적용)임.